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지구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특구 변경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 기술 연구·창업 공간확장 필요에 대한 수요로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추가 완화하는 한편, 종사자 복지증진, 편의 제공을 위해 허용건축물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특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미한 특구 변경 사유 추가(안 제6조의2)
- 경미한 특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특구 지구계가 변경되는 경우, 특구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 개발계획 승인’과 ‘특구 변경’ 승인 간 절차통일로 업무혼선 방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중 특구법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를 현행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추가 완화하여 신기술·신산업 연구·창업 공간 확장 수요에 뒷받침하고자 함

다. 허용건축물 완화(안 시행령 별표 1)

-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허용건축물에 종사자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금융업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관련시설 추가
- 2) 산업육성구역 내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연계를 통해 입주 기관(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데이터센터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9.13. ~2023.10.23..)
3) 행정규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2제4항 각목에 해당하여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또는 경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5조의9”를 “같은 법 제45조의17”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녹지지역 중 법 제35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구분된 지역의 경우 기존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1 제6호마목 중 “제3호가목·나목·라목·마목”을 “제3호가목·나목·라목·마목·자목(금융업소만 해당한다)·차목”으로, “제4호라목·아목”을 “제4호라목·아목·파목·하목(금융업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차목 및 카목을 각각 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

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별표 9 제2호가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5백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6.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의 시설
- 1) 연구소(과학기술활동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첨단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소 안에 설치하는 시험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 2) 학교(과학기술분야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대학원, 과학고등학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 3) 도서관
-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과학기술분야의 전시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라.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나목·라목·마목·자목(금융업소만 해당한다)·차목 및 같은 표 제4호라목·아목·파목·하목(금융업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진흥재단 또는 제3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분양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한다)

7. 산업육성구역: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로 한정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만 해당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u>500</u>
나.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호	<u>350</u> <u>700</u> <u>1,000</u>
다.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2호	<u>350</u> <u>700</u> <u>1,000</u>
라. 법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3호	<u>350</u> <u>700</u>

3)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u>1,000</u>
마.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	<u>350</u> <u>700</u> <u>1,000</u>
바. 법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5호	<u>350</u> <u>700</u> <u>1,000</u>
사.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u>1,500</u>
아.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주기관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u>1,000</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특구의 변경) ① (생략)	제6조의2(특구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제7조의2제4항 각목에 대하여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또는 경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u>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생략)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u>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 ----- ----- ----- ----- ----- <u>제1항</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u>제45조의9</u>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u>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u>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 -----. 1. ----- ----- ----- ----- ----- 같은 법 <u>제45조의17</u>-----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 ----- ----- ----- <u>녹지지역 중 법 제35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구분된 지역의 경우 기존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44